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안 받았어도”

아동학대로 기소...어린이집 운영 손해 처벌 없었으나 해고...“부당해고” 주장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그로 인한 어린이집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씨의 아동학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어린이집 학부모는 물론 동료 보육교사들도 B씨의 복직

을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B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복직판정을 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

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원아모집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낮잠 시간 중 공동유치실에서 놀던 아이가 보육실로 들어오려 하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며 문을 반대로 밀어 아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몸을 확인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나기자



순천경찰,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순천경찰(서장 최병운) 최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순천 여성상담센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사건 발생 시 합동 대응체계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나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21일 나주시 죽림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 교통안전공단과 나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경찰서 2022년 주요업무 및 성과양상보고회



강진경찰, 2022년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21일 3층 어울마당에서 각 실·과장, 계·팀장 및 지·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비상구·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소방, 건설현장 용접 절단 불티에 따른 화재예방 당부

무안소방서는 지난 22일 건축 공사장의 용접 절단 불티에 의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완도해경, 해상 양식장 부대시설 화재 진압...인명 피해 없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난 21일, 전남 완도군 고금면 소재장보고대교 인근 해상 양식장 부대시설(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과 합동 진화에 나섰다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전쟁 반대 촉구하는 제한 러시아인들. 제한 러시아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우울·극단선택’ 위험군, 동네의원→정신기관 치료연계

동네 비정신과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우울·극단선택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치료가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2년간 부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극단선택 생각률이 9.7%에서 13.6%로 4.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 위험군도 17.5%에서 18.9%로 악화됐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실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7.2%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 극단선택이 압박한 사람의 59.4%는 극단선택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진료 시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등의 우울·극단선택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등을 실시해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각 의원은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연계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연계 성공 수기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부산시내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1차 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 물어’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이슬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경찰,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탄·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가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계속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를 통해 하면 된다. 대리인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에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은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 무기류 소지 집중 단속에 나서 예정이

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불법무기류 검거 관련 신고자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서선욱기자

5·18 계엄 해제 성명...조태일 42년만에 ‘무죄’

법원 “헌정 질서 지킨 정당행위, 계엄령은 위험·위법”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계엄 해제를 촉구한 저항 시인 죽령(竹嶺) 조태일(1941~1999년)씨가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조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저항 시인인 조씨는 자유실천문인협회(자실) 간사직을 맡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고은 등 자실 회원 25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문인들의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된 문인들에게 영지금을 나눠주

기로 결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조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조씨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재판장은 “재심 대상 판결에 적용된 계엄 포고 제1호는 전두환 등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발령된 것으로, 발령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또 집회·결사·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계엄 포고령이 해제·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강직한 정신으로 독재에 온몸으로 맞섰고 많은 저항 시인을 양성했다.